

1. 개정이유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634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됨에 따라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신청, 통지 및 반납 등에 관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토부장관이 피해자등 지원을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신용정보 제공요청 및 제공 사실의 임대인 통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신청, 통지 및 반납 규정 마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신설)
- 나. 임대인 신용정보 제공요청 및 제공 사실의 임대인 통보 절차 규정(안 제1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령 제 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최소지원금의 신청) ① 법 제25조의9제1항에 따른 최소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최소보장피해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 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제2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해자결정문 사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를 말한다.)
3. 주민등록표 초본 및 신분증 사본
4.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신탁원부(신탁사기피해자)
 6.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7. 임대인등으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 받은 경우 관련 서류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신청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9.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신청인은 질병, 해외체류 또는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정하는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③ 법 제25조의9제1항에 따른 최소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최소보장피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자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매입을 요청한 경우 :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차액 산정 이후
 2. 전세사기피해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완료한 이후
 3. 신탁사기피해자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을 요청한 경우 : 법 제25조의3제8항에 따른 차액 산정 이후
 4.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않은 최소보장피해자의 경우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법원 등을 통한 경매 배당 또는 공매 배분이 완료된

이후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이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이 완료된 이후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법 제25조의9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을 위한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선지급금의 신청) ① 법 제25조의10제1항에 따른 선지급금을 신청하려는 최소보장피해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 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해자결정문 사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를 말한다.)
3. 주민등록표 초본 및 신분증 사본
4.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신탁원부(신탁사기피해자)
6.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7. 임대인등으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 받은 경우 관련 서류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신청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9.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

당한다)

② 신청인은 질병, 해외체류,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정하는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법 제25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라 선지급금을 신청하려는 최소보장피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탁사기피해자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 요청한 경우 : 신탁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2. 신탁사기피해자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매입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 신탁사기피해주택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신탁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면서 선지급금의 지급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법 제25조의10제1항제1호 중 신탁사기피해자가 아닌 자(법 제25조의9제1항에 따른 최소보장피해자에 한함)의 경우 : 최소보장피해자의 피해주택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되는 등 해당 피해주택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른 지급결정을 위한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최소지원금, 선지급금의 지급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최소보장피해자에게 별지 제17호에 따라 통지하고 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영 제4조의6에 따라 정산이 완료된 경우 정산결과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선지급금을 지급받은 최소보장피해자에게 정산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지급 결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정산결과를 통지받은 최소보장피해자가 통지받은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8호의 이의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되, 최소보장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 ① 최소보장피해자가 법 제25조의11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의6서식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신고

서를 작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한 사실을 지체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25조의11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에 관하여는 제6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의3제1항의 “법 제15조의2제5항” 및 제2항의 “법 제15조의2제6항”은 각각 “법 제25조의11제1항 및 제2항”, “법 제25조의11제3항”으로 본다.

③ 법 제25조의11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납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5조의11제1항제1호 : 회수하거나 변제받은 금액 전부. 다만, 그 금액이 지급받은 최소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지원금 한도로 한다.
2. 법 제25조의11제1항제2호 : 회수하거나 변제받은 금액 전부. 다만, 그 금액이 선지급금에서 정산대상액을 뺀 금액(이하 “차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한도로 한다.
3. 법 제25조의11제1항제3호 : 지급받은 선지급금 전액
4. 법 제25조의11제2항제1호 : 지급받은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 전액
5. 법 제25조의11제2항제2호 : 과오지급된 금액
6. 법 제25조의11제2항제3호 : 지급받은 선지급금 전액

제16조(신용정보의 제공요청 및 제공 사실의 통보) ①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대인에 대한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조회의 기준일 또는 기간
3. 사용 목적
4. 요청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제공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명칭
3. 신용정보의 내용(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을 포함한다)

③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신용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

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별지 제16호
서식부터 제18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개월 (필요시 30일 이내에서 연장)
①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②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③ 피해정보 관련	1. 피해주택 소재지	
	2. 임차보증금	원
	3.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하여 받은 금액	원
	4.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	원
④ 피해자 유형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3호) [] 전세사기피해자등(법 제2조제4호다목 중 신탁사기피해자 또는 무권계약 피해자가 아닌 자) [] 신탁사기피해자 [] 무권계약 피해자	
⑤ 신청 구분	[] 최소지원금 [] 선지급금 * 선지급금은 최소보장피해자 중 법 제25조의10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⑥ 지급요청 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9제1항 및 제25조의10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중

첨부서류	뒤쪽 참조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첨부서류	1. 최소지원금 등 산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한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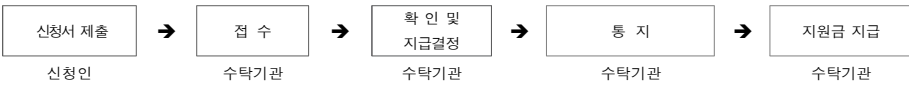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란 중 주소는 신청 당시의 주민등록지 주소를 적습니다.
- ②란은 법정대리인이 신청하거나,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 ③-1호란은 소재지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동·층·호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 ③-2호란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당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을 정확히 기재하고, 금액은 원단위까지 기재합니다.
- ③-3호란은 경매 또는 공매 등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즉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배당 또는 배분을 받았거나 대항력을 행사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금액 등을 모두 기재합니다.
- ③-4호란은 임대인등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일체의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소송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변제받은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④란은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등 유형을 적고,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경우 선지급금 신청대상(신탁사기 피해자, 무권계약 피해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세부유형별로 표기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중 신탁사기피해자는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된 주택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을 의미
 - 전세사기피해자등 중 무권계약 피해자는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을 의미
- ⑤란은 해당사항이 있는 곳에만 기재 또는 표시합니다.
- ⑥란은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를 기재합니다.(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만 기재)

처리절차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 결정 통지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귀하의 지급 신청(접수번호 제 호)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9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최소지원금** [] **선지급금** [] **지급 대상자로 결정** [] **결정되지 않았음** [] 을 알려드립니다.

지급금 종류	[] 최소지원금 [] 선지급금	
지급액	금액 :	원정(₩)
산정내역	1. 임차보증금	원
	2. 최소보장금(임차보증금의 1/3)[A]	원
	2.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하여 받은 금액[B]	원
	3.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 [C]	원
	4. 경매차익 및 임대료 재정지원액 [D]	원
	5. 지급액 [= A-(B+C+D)]	원
미지급 사유 (해당되는 경우)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인

이의신청 안내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00조제0항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이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수탁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 지급결정 등 이의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신청 사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최소지원금, 선지급 지급결정 및 정산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대리인칸은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센터에 센터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③ (생략) <신설>	제2조(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 ----- -----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최소지원금의 신청) ① 법 제25조의9제1항에 따른 최소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최소보장피해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 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제2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해자결정문 사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 당시 제

- 출한 서류를 말한다.)
3. 주민등록표 초본 및 신분증 사본
 4.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신탁원부(신탁사기피해자)
 6.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7. 임대인등으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 받은 경우 관련 서류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신청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9.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신청인은 질병, 해외체류 또는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정하는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③ 법 제25조의9제1항에 따른 최소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최소

- 보장피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자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매입을 요청한 경우 :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차액 산정 이후
 2. 전세사기피해자의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해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완료한 이후
 3. 신탁사기피해자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을 요청한 경우 : 법 제25조의3제8항에 따른 차액 산정 이후
 4.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않은 최소보장피해자의 경우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법원 등을 통한 경매 배당 또는 공매 배분이 완료된 이후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이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이 완료된 이후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보완이

<신 설>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법 제25조의9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을 위한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선지급금의 신청) ① 법 제25조의10제1항에 따른 선지급금을 신청하려는 최소보장피해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 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해자결정문 사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를 말한다.)
3. 주민등록표 초본 및 신분증 사본
4.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신탁원부(신탁사기피해자)
6.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매 또

는 공매에 따른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7. 임대인등으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 받은 경우 관련 서류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신청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9.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신청인은 질병, 해외체류,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정하는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법 제25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라 선지급금을 신청하려는 최소보장피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탁사기피해자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 요청한 경우 : 신탁사기피해주택의 매

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2. 신탁사기피해자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매입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 신탁사기피해주택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신탁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면서 선지급금의 지급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법 제25조의10제1항제1호 중 신탁사기피해자가 아닌 자(법 제25조의9제1항에 따른 최소보장피해자에 한함)의 경우 : 최소보장피해자의 피해주택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되는 등 해당 피해주택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른 지급결정을 위한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

<신 설>

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최소지원금, 선지급금의 지급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최소보장피해자에게 별지 제17호에 따라 통지하고 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영 제4조의6에 따라 정산이 완료된 경우 정산결과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선지급금을 지급받은 최소보장피해자에게 정산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지급 결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정산결과를 통지받은 최소보장피해자가 통지받은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8호의 이의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3항

<신 설>

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되, 최소보장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 ① 최소보장피해자가 법 제25조의11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의6서식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한 사실을 지체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25조의11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에 관하여는 제6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의3제1항의 “법 제15조의2제5항” 및 제2항의 “법 제15조의2제6항”은 각각 “법 제25조의11제1항 및 제2항”, “법 제25조의11제3항”으로 본다.

③ 법 제25조의11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납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5조의11제1항제1호 : 회수하거나 변제받은 금액 전부. 다만, 그 금액이 지급받은 최소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지원금을 한도로 한다.
2. 법 제25조의11제1항제2호 : 회수하거나 변제받은 금액 전부. 다만, 그 금액이 선지급금에서 정산대상액을 뺀 금액(이하 “차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한도로 한다.
3. 법 제25조의11제1항제3호 :

<신 설>

지급받은 선지급금 전액

4. 법 제25조의11제2항제1호 :
지급받은 최소지원금 또는 선
지급금 전액

5. 법 제25조의11제2항제2호 :
과오지급된 금액

6. 법 제25조의11제2항제3호 :
지급받은 선지급금 전액

제16조(신용정보의 제공요청 및
제공 사실의 통보) ① 법 제29
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
게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임대인
에 대한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
한다. 이하 같다)를 요청하는 경
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임대인
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조회의 기준일 또는 기간
3. 사용 목적
4. 요청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제
공을 요청받은 신용정보집중기
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명칭
3. 신용정보의 내용(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
제금액 등을 포함한다)

③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신용
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
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2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